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53 발의연월일: 2021. 4. 8.

발 의 자: 강기윤・안병길・권명호

성일종 · 최춘식 · 이명수

최형두 · 김선교 · 박성중
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근로자들이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,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~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,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9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4(예방접종 후 부작용 경감 등을 위한 조치)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,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휴가 기간 및 종류, 예산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9조의4(예방접종 후 부작용 경
	<u>감 등을 위한 조치) ① 국가와</u>
	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예방
	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
	<u>감,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</u>
	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
	를 보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휴가 기간 및
	종류, 예산 지원 등 그 밖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